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초 중 등 교 육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유은혜 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통합·운영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이나 교육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

이에 학교 통합·운영 추진 시 관할청은 학교의 통합·운영 여건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정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관할청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절차 및 실태조사 실시 기준, 결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학교 학생,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 마련(제56조제5항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협의예정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(2020. 0. 0. ~ 0. 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안

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관할청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 및 실태조사 실시 기준, 결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수립 할 때에는 해당학교 학생,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u>제56조⑤ 관할청은 법 제30조③항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 및 실태조사 실시 기준, 결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수립 할 때에는 해당학교 학생,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한다.</u>